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8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 박주민·전진숙·장종태

이기헌 • 박홍배 • 복기왕

김한규 • 박지원 • 박해철

주철현 · 임미애 · 전현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'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'로 인해 자신이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 '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'외 발달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.

이에,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'신체적·정신적 장애'로 확대함으로써,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7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7조제6항 중 "視覺 또는 身體의 障碍"를 "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말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	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
차) ① ~ ⑤ (생 략)	차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選擧人은 投票所의 秩序를	6
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	
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	
께 투표소(초등학생인 어린이	
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	
다)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, 視	<u>장애</u>
覺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	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
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	<u>각 호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</u>
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	<u>장애를 말한다)</u>
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	
조하게 할 수 있다.	
⑦ ・ ⑧ (생 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